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7365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문대림 · 윤준병 · 정춘생
김한규 · 이기현 · 임호선
양문석 · 부승찬 · 문금주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장 등이 이를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 개정안을 2024년 5월에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용이해 졌으나, 항해당직자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분산되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 재해가 해상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제2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발생시킨”을 “발생시킨 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의2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 ①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관할해역 내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 (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2.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보는 행위

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1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

1의3.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u>발생시킨</u> 선박	3. ----- ----- <u>발생시킨</u> <u>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u> <u>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u> <u>를 발견한</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 ② (생략)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 ----- ----- ----- ----- ----- -----.

1. ~ 4.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 ①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관할해역 내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에 필요한

<신 설>

제11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 (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2.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보는 행위

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u>제24조제1항</u>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 23. (생략) ④ ~ ⑥ (생략)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u> <u>1의3.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u>----- 8. ~ 2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